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25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윤준병・이기헌・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문대림 · 김윤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42조제1항).
- 나. 학교 등이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 다.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3조제3항).
- 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마.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4조 제4항).
- 바.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4제3항).
-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

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4조의2제1항및 제3항).

- 아.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5조의3제1항).
- 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 차.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제1항).
- 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입점 상인 등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 타.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 중 "2024년"을 각 각 "2029년"으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	
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	
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	
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	
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u>2024년</u> 12월 31일까지 면	<u>2029년</u>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저 면제) ①·② (생 략)
 -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
1. • 2. (현행과 같음)
2
<u>2029년</u>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 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2. (생략)
- ④ (생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 1. (생략)
- 2. 2020년 1월 1일부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_
	_
	_
	_
	_
	_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학	<u></u>
감면) ①	_
	_
	_
	_
	_
	_
	_
	_
- ,	
1. (현행과 같음)	
2 <u>2029</u> t	<u>크</u>
	_
	_
	_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 나.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 1. ~ 3. (생략)
- ③ (생략)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 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②
<u>2029년</u>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2029년</u>
2029년
<u>.</u>

⑤ (생 략)

-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 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 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 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 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 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율을 2024년 12월 3 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 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제4	173	<u> </u> 의4(1	내진성	는	확보	건축물
C	케	대한	감면)	1	• ②	(현행과
Ž	같음	<u>)</u>				
(3					
-						
-						
-						
-						
-						
-						
-						
-						
-				<u>2(</u>)29년	
-						
-						
-						
-						
제7	743	스의2(I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
C	겁	등에	대한	감면	1) (1))
-						
-						
-						
-						
-						
-						

⑤ (현행과 같음)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 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 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 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 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 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 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 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 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 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부과한다.

<u>2029년</u>

- ② (생 략)
-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 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 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 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 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 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 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 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 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 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9년</u>
<u>.</u>
· 1. ~ 3. (현행과 같음)
세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 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년 12 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 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을 경감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략)

<u>2029년</u>
<u>2029년</u>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 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 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029년-----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 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 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 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 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u>2024년</u>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저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 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 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 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 저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u>2029년</u>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장의 지방 이	 전에	따른
감면) ①		
<u>2029년</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u></u> 감
면) ①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 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 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

<u>2029년</u>
②
<u>2029년</u>

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1. ~ 4. (생 략)
- ② ~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2</u> (<u>)29년</u>
12월 31일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